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17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, 피고와 D 사이에, 피고와 E 사이에 각 체결된 2012. 12. 1.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. 2. 피고는 C, D, E에게,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9. 3. 4. 접수 제1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2 목록 순번 2, 3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. 3. 4. 접수 제16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’은 ‘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’으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

1)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‘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, D, E 사이에 체결된 2012. 12. 1.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 계약은 이를 취소하고, 피고는 C, D, E에게 각 2/9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9. 3. 4. 접수 제1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9. 3. 4. 접수 제16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’는 것이나,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및 제출된 서증의 기재에 비추어, 원고는 주문과 같이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.